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528
----------	-------

발의연월일 : 2025. 12. 23.

발의자 : 박수현 · 박지원 · 조계원

허영 · 김영배 · 정태호

조인철 · 김원이 · 이개호

한정애 · 이정문 · 양문석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광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능력을 갖춘 자를 전담여행사로 지정하고, 유효기간을 두고 지정을 갱신하고 있음.

또한 고의나 공모에 의한 이탈사고, 전담여행사가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여행업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단체관광객의 무단이탈이 과다한 경우에는 현행법 상 명시적인 행정제재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무단이탈의 정도와 위반 횟수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행정제재를 차등을 두어 명할 수 있도록 제재수단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담여행사가 유치한 단체관광객의 무단 이탈자의 수, 이탈율, 이탈 사유, 이탈 시간 및 횟수 등에 따라 전담여행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제제수단을 신설하고,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하여 여행업계의 공정한 질서를 세우려고 함(안 제12조의3제4항 신설 등).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4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에 전담여행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우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관광객이 여행 목적에 맞지 아니하게 무단으로 이탈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 무단 이탈자의 수, 이탈율, 이탈 사유, 이탈 시간 및 사고 횟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전담여행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80조제3항제1호의2를 제1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담여행사의 지정 · 갱신 심사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의3(전담여행사 지정 등)</p> <p>① · ② (생 략)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담여행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p>1. ~ 3. (생 략)</p> <p><u><신 설></u></p> <p>4. (생 략)</p> <p><u><신 설></u></p>	<p>제12조의3(전담여행사 지정 등)</p> <p>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u>4. 제4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u> <u>에 전담여행사의 업무를 수행</u> <u>하는 경우</u></p> <p><u>5. (현행 제4호와 같음)</u></p> <p><u>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관광객이 여행 목적에 맞지 아니하게 무단으로 이탈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 무단 이탈자의 수, 이탈율, 이탈 사유, 이탈 시간 및 사고 횟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전담여행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u></p>

<p><u>④ (생 략)</u> 제80조(권한의 위임 · 위탁 등) ① · ② (생 략)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 · 업종별 관광협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연구 · 검사기관, 자격검정기관이나 교육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p> <p>1. (생 략)</p> <p><u><신 설></u></p> <p><u>1의2. (생 략)</u> 2. ~ 9. (생 략) <u>④ ~ ⑥ (생 략)</u></p>	<p><u>⑤ (현행 제4항과 같음)</u> 제80조(권한의 위임 · 위탁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u>1의2. 제12조의3제1항 및 제2항</u> 에 따른 전담여행사의 지정 · <u>갱신 심사</u> <u>1의3. (현행 제1호의2와 같음)</u> 2. ~ 9. (현행과 같음) <u>④ ~ ⑥ (현행과 같음)</u></p>
--	---